

종합심사낙찰제

2014. 1

기획재정부



순서

I. 공공공사 발주제도 현황

II. 추진경과

III. 종합심사낙찰제 개요

IV.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방법

V. 시범사업 및 추진일정

» ① 공공공사 발주제도 현황



1. 공공공사 발주제도 구분

설계 · 시공 분리	적격심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억원 미만 공사 ⇒ 최저가 입찰자부터 “수행능력+가격” 을 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선정
	최저가 낙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억원 이상 공사 ⇒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입찰금액이 저가심의를 통과할 경우에 낙찰자로 선정
설계 · 시공 일괄	턴키 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억원 이상 고난도 공사 등 ⇒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입찰하고, 최고점수 획득자를 선정
	대안 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억원 이상 고난도 공사 등 ⇒ 원안설계입찰과 대안설계입찰을 병행 입찰하되, 발주기관에게 최고 이익이 되는 자를 선정
	기술제안 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징성, 예술성 등이 필요한 고난도 공사 ⇒ 입찰자가 기술제안을 하고, 최고점수 획득자를 선정

2. 공공공사 낙찰 방법별 발주규모

(단위 : 억원, 건)

연도	구분	계	턴키·대안	최저가	적격심사	수의계약
2010	금액	461,087	87,912	173,464	191,616	8,095
	(비중)	(100.0%)	(19.1%)	(37.6%)	(41.6%)	(1.8%)
	건수	19,690	105	185	11,953	7,447
2011	금액	460,167	73,349	206,415	170,861	9,542
	(비중)	(100.0%)	(15.9%)	(44.9%)	(37.1%)	(2.1%)
	건수	19,673	88	241	10,350	8,994
2012	금액	409,143	86,795	140,588	171,785	9,975
	(비중)	(100.0%)	(21.2%)	(34.3%)	(42.0%)	(2.4%)
	건수	19,913	74	166	10,334	9,339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Ⅱ 추진 경과



1. 추진 배경

- **최저가낙찰제 개선이 국정과제에 포함**
 - “**가격과 공사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낙찰 제도**(예: 종합평가방식 등) 도입검토 및 주요 공기업 시범사업 추진”

2. 추진 경과

- [’12.8~’13.6] 「**최저가낙찰제 · 적격심사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수행
- [’13.6.17] **연구용역 결과를 국회(기재위)에 보고**
- [’13.8.21] **공사 발주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
- [’13.7~10] **국가계약제도 연구포럼 운영**
 - 건설업계, 민간 전문가, 정부, 공공기관 등 25명이 12회 회의

3. 개편 방향

현행	개편	기대효과
입찰가격을 중심으로 평가	가격과 공사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공사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적정 가격으로 공사를 수행

» Ⅲ 종합심사낙찰제 개요



1. 기본방향

- 평가항목별 점수는 정량적/객관적으로 산출
- 사업 특성의 반영 및 발주기관의 선택권 존중
 - 발주기관이 사업목적,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 배점을 선택
- 공사 발주제도의 공공성 확충
 - 공정거래 기업, 성실 시공업체에 수주 기회 확대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을 통해 업체의 경쟁력 확충

현 행			개 선(안)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제	→	100억 원 미만	적격심사제
			100억 원 ~ ~300억 원	최저가낙찰제 적용 유예(2년)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	종합심사제 시범사업 실시 (가격 + 공사수행능력 + 사회적 책임)	
고난이도 공사 등	설계·시공 일괄, 기술제안입찰	→	설계·시공 일괄, 기술제안입찰	

2. 선정기준



※ 동일 점수시 입찰가격이 낮은 자를 선정

2. 선정기준

심사 분야	평가 항목		가중치 범위
공사수행능력 (40~50점)	전문성	동일공사 시공실적	20~30%
		매출액 비중	0~20%
		배치 기술자	20~30%
	역량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30~50%
		규모별 시공역량	0~20%
소 계		100%	
입찰가격 (50~60점)	가 격		100%
	가격 산출의 적정성		감점
사회적 책임 (가점 1점)	건설인력 고용		20~40%
	공정거래		30~40%
	건설 안전		20~40%
	소 계		100%

» Ⅳ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 방법



1. 공사수행능력

1

동일공사 시공실적 (필수)

-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핵심공법, 구조, 규모 등(3개 이내)의 시공경험 보유여부 평가

$$\text{시공실적 점수} = \text{배점} \times \frac{\sum_{i=1}^n \text{동일 공사실적}_i \times A_i}{\text{당해공사의 동일공사 규모} \times B}$$

(단, 평가점수는 만점 초과 불가)

* A : 실적의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계수로 3년 미만(1), 3~5년(0.9), 5년 이상(0.8) 적용

** B : 만점기준을 조정하는 계수로 발주기관이 시장조사 등을 통해 설정

※ 동일공사실적은 건설협회가 심사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의해 확인
(단, 건설협회 실적증명 발급 시스템 완비 전에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에 의해 확인)

➔ 기술력, 시공경력이 있는 입찰자 우대

1. 공사수행능력

1

동일공사 시공실적 (필수)

[평가 예시] 당해 동법 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이고, 경간 80m이상인 트러스교가 포함된 공사를 시공한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

* 배점 : 10점, 만점기준 조정 계수 : 2.0, 입찰공고일 : 14.3.1

○ A사 실적 보유 현황

공사명	교량	경간장(m)	실적금액(억원)	준공일자
1-1도로	1-1교량	80	300	2005/11/20
1-2교량	1-2교량	50	100	2012/11/20
2도로	2교량	100	350	2009/12/30

※ Σ (실적금액 × 기간 경과계수) = (300억원 × 0.8) + (350억원 × 0.9) = 555억원

○ A사 동일공사 시공실적 점수 = 10점(배점) × {555억원 / (300억원 × 2.0)}
= 9.25점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대로 조정

1. 공사수행능력

1

동일공사 시공실적 (필수)

□ 발주기관이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별로 지정 (3개이내)

- ① 현장부지여건(지질, 용수, 지장물, 인접구조물 상태 등)과 유사 여건의 경험
- ② 해당 공사의 주요 구조부 시공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을 사용한 시공경험
- ③ 해당 공사와 동일한 구조 양식의 시공경험
- ④ 해당 공사의 규모(체적, 높이, 길이연장 등) 이상의 시공경험
- ⑤ 해당 공사의 특수한 설계 요소나 설비, 자재 등의 시공경험

※ 사업추진의 핵심기술에 해당하고, 총공사의 10%이상의 비용,노동력,시간이 소요되는 항목으로 한정

1. 공사수행능력

1

동일공사 시공실적 <예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동일공사 분류
토목	교통 시설	교량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초장대교량 등
		터널	NATM, TBM(SHIELD포함), 침매터널, 기존 지하철 하부시공 등
	수자원시설	댐	필댐, 콘크리트댐, 사력댐, 어도(魚道) 등
		하천	하구둑, 수문(통문포함), 제방, 보 등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폐수처리시설 포함), 상수도(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지방상수도)
	기타 토목	부지조성 등	연약지반, 사면보강, 대용량 지하터파기 등
건축	주 거	아파트	내진/면진구조, 태양열집열판, SRC조 아파트 등
	비주거	철도역사	지상역사, 선상역사, 선하역사, 지하역사 등
		기 타	초고층빌딩, 클린룸, 내진/면진구조, 태양열집열판, 기존건물 연접시공 등

※ 발주기관이 프로젝트별 추가지정 가능

1. 공사수행능력

1-① 동일공사 시공인력 (선택)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핵심공법 등 시공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공사 유경험 인력을 보유한 업체 우대
: **최대 10명**까지 포함가능, 동일공사 시공실적 배점의 **최대 80%**까지 득점가능
- 동일공사 시공인력 = 동일공사 시공실적 배점 × **등급별 가중치(%)** × 0.8

〈등급별 가중치 (예시)〉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등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등급	가중치
A (4.50이상)	100%	A (4.00이상)	100%	A (4.00이상)	100%
B (3.30이상)	90%	B (3.00이상)	90%	B (3.00이상)	90%
C (2.60이상)	80%	C (2.00이상)	80%	C (2.00이상)	80%
D (1.30이상)	70%	D (1.00이상)	70%	D (1.00이상)	70%

- 1) 등급은 “∑ 등급계수 × 경력계수 × 관리능력계수” 로 판단
- 2) 등급계수 : 기술자 등급(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경력계수 : 동일공사 현장경력(3년 이상 1.0, 5년 이상 1.5, 10년 이상 2.0)
 관리능력계수 : 동일공사 현장대리인 경력(2년 미만 1.0, 2년 이상 1.1, 5년 이상 1.3)

1. 공사수행능력

1-① 동일공사 시공인력 (선택)

평가 예시) 추정가격 1,200억원의 고속도로 공사로서 터널의 TBM공법을 시공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로 평가

[A업체] TBM 공법의 현장 경력이 12년 [현장대리인 경력이 6년임]인 특급기술자 1인
TBM 공법의 현장 경력이 6년(현장대리인 경력이 1년) 고급기술자 1인 보유
⇒ 등급 = $\sum(\text{등급계수} \times \text{경력계수} \times \text{관리능력계수})$
= $(1.0 \times 2.0 \times 1.3 = 2.6) + (0.75 \times 1.5 \times 1.0 = 1.125) = 3.725$ <B등급>

👉 **시공인력 점수 = 10점(배점) × 90%(B등급) × 0.8 = 7.2점**

※ 동일공사 시공인력은 실적증명서에 의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경력증명서로 확인

1. 공사수행능력

2

동일공종그룹 매출비중 (선택)

○ 입찰자의 동일 공종그룹 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

$$\text{동일공종그룹 매출 비중} = \text{배점} \times \frac{\text{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총액}}{\text{10년간 업종별 (토목 or 건축) 실적총액}} \times 100$$

* 최근 실적 우대 : 최근 3년미만 실적 100%, 3~5년 실적 : 90%, 5년이상 실적 : 80%로 조정(연도기준)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대로 조정

평가 예시) 터널공사(동일공종그룹 : 교통시설)로서 배점 10점인 경우

(A업체) 10년간 토목 기성실적 1조 5천억원, 10년간 교통시설 실적 8,000억원

☞ 동일공종그룹 매출비중 점수 = 10점 × {(8,000억원/1조 5,000억원)} = 5.33점

※ 동일공종그룹/업종별 실적총액은 건설협회 발급 실적증명서로 확인

➡ 특정분야에 기술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건설업체 우대

1. 공사수행능력

2

동일공종그룹 매출비중 (선택)

동일공종그룹의 분류 (예시)

업종	동일공종그룹	동일공종 분류
토목	교통시설	도로
		교량
		터널
		공항
		지하철
		철도
	수자원시설	항만
		댐
		운하
		하천
		치수
		상하수도
	기타토목	정수장
		택지조성 등

업종	동일공종그룹	동일공종 분류
건축	주거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비주거시설	주거상업겸용건물
		주거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1. 공사수행능력

3

배치기술자의 동일공종그룹 시공경력 (필수)

○ 실제 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과 분야별 핵심기술자의 시공경력을 평가

<p>현장 대리인 [예시]</p>	<p>○ 동일공종그룹 현장대리인 경력점수(A) + 동일공종그룹 기타직위 경력점수(B) (20점 만점 기준시) ↑ ↑</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363 639 919 801"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A^* = \frac{\text{근무일수}}{3\text{년} \times 365} \times 20(\text{배점})$ <p>·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p> </div> <div data-bbox="1108 639 1734 801"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B^* = \frac{\text{근무일수}}{5\text{년} \times 365} \times 5(\text{가점})$ <p>· 가점만점을 초과할 수 없음</p> </div> </div>
<p>분야별 책임자 [예시]</p>	<p>○ 동일공종그룹 경력점수(A) (10점 만점 기준시)</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A^* = \frac{\text{근무일수}}{5\text{년} \times 365} \times 10(\text{배점})$ <p>·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p> </div> <p>○ 분야별 책임자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공사 주된 공종 3개 이내(품질, 안전, 시공 등)에서 발주기관이 정하는 분야의 책임자

1. 공사수행능력

3

배치 기술자의 동일공종그룹 시공경력 (필수)

[평가방법 및 체계]

- 당해공사 예정가격의 20% 이상 금액의 공사경력만을 인정
 - 당해 업체 6개월 미만 재직자는 만점 대비 80%만 인정
 - 동일 기술자가 두 개 이상의 공사에 동시 낙찰될 경우, 발주기관 승인 하에 동등 자격 이상의 기술자 배치 가능
 - 공동수급체에서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기술자를 평가
 -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배치기술자 교체시 일정기간(2년)간 감점
- ※ 기술자의 시공경력은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로 확인

1. 공사수행능력

3

배치 기술자의 동일공종그룹 시공경력 (필수)

예시1) 현장대리인 평가 (터널공사)

교통시설 현장대리인 경력 2년, 기타 직위 6년 경력 보유
(20점 만점에 현장대리인 20점, 기타 직위 5점(가점) 부여)

☞ 동일공종그룹 현장대리인 경력점수 = $(730\text{일} / 1,095\text{일}) \times 20\text{점} = 13.33\text{점}$



☞ 동일공종그룹 기타직위 경력점수 = $(2,190\text{일} / 1,825\text{일}) \times 5\text{점} = 6\text{점} \rightarrow 5\text{점(가점만점)}$



평가점수 : 18.33점

1. 공사수행능력

3

배치 기술자의 동일공종그룹 시공경력 (필수)

예시2) 분야별 책임자 평가 (터널공사 품질책임자 및 안전책임자)

A : 교통시설 품질기술자로 4년 경력 보유 (배점 : 5점)

B : 교통시설 안전기술자로 6년 경력 보유 (배점 : 5점)

(10점 만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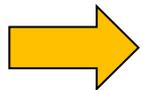
☞ 기술자 A의 품질분야 경력점수 = $(1,460\text{일} / 1,825\text{일}) \times 5\text{점} = 4\text{점}$



☞ 기술자 B의 안전분야 경력점수 = $(2,190\text{일} / 1,825\text{일}) \times 5\text{점} = 6\text{점} \rightarrow 5\text{점(배점)}$



평가점수 : 9점



숙련된 기술자 배치를 통한 공사책임시공 및 품질제고

1. 공사수행능력

4

과거 시공평가 점수 (필수)

○ 입찰자가 수행하였던 과거 공공공사의 시공평가결과를 평점화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 완료시
공사 완성도, 품질, 공정관리 등을 대상으로 발주기관이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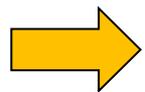
- 최근 3년간 해당 업체가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받은 시공평가점수의 가중평균

* 시공평가점수가 없는 업체는 동일업종 (토목, 건축 등) 공사에 대해 평가하고,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업체의 경우는 기본점수 (예 : 80점) 부여

- 시공평가점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료를 활용하되, 시범사업 중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발주기관이 평가한 자료*를 활용

* 해당 기관에서 평가한 최근 3년간 동일공종그룹 평균점수를 활용하되,
평가건수가 부족한 발주기관은 5~10년 자료 활용 가능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대로 조정



신뢰성 있는 실적평가 결과 환류 및 성실한 사업수행 유도

1. 공사수행능력

4

과거 시공평가 점수 <예시>

【평가 예시】 A업체가 최근 3년간 교통시설 관련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공사명	공사규모(억원)	시공평가점수
0000 국도 확장공사	200	90
0000 교량 보강공사	300	85
0000고속도로 확장공사	500	95

⇒ A업체의 시공평가 평점 = $\frac{(200 \times 90 \text{점}) + (300 \times 85 \text{점}) + (500 \times 95 \text{점})}{(200 + 300 + 500)} = 91 \text{점}$

- 배점점수 평가 기준은 기관별 점수 분포를 감안하여 발주기관이 설정 가능

시공평가점수(예시)	95점 이상	92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이상	80점 이상	80점 미만
배 점	100%	90%	80%	70%	60%	50%

☞ 시공평가 점수 = 30점(배점예시) × 80%(91점) = 24점

1. 공사수행능력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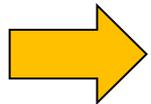
공사 규모별 시공역량 (선택)

- 공사 난이도 · 규모에 따라 입찰등급제(유자격자 명부)를 운영하고, 상위등급 업체가 하위등급 사업에 입찰시 감점 처리

- 2등급 이하 공사는 상위업체 지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상위 등급의 공동도급 참여 지분율을 제외한 점수만 인정

- * 규모별 시공역량 = 공사 배점 × (100% - 상위등급 지분율%)



유사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간 공정한 경쟁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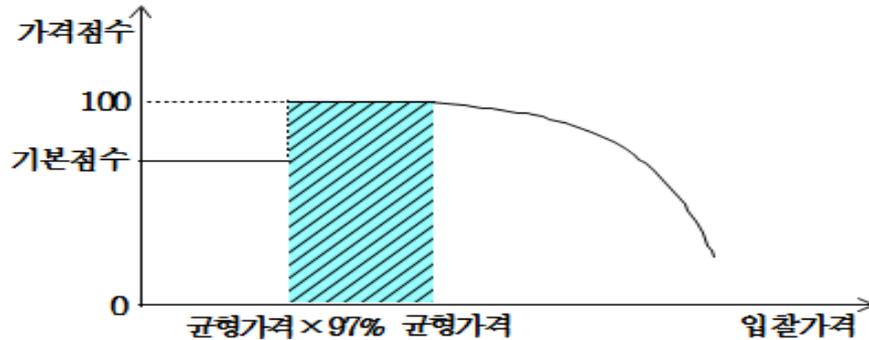
2. 입찰가격

1 가격점수 산정 방법

- 일정한 입찰자의 평균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점수 산정
- 입찰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되, 점수상승폭은 체감

$$* \text{가격평가} = \sqrt{1 - \left(\frac{\text{당해투찰금액} - \text{균형가격}}{\text{예정가격} - \text{균형가격}} \right)^2} \times 100$$

- 과잉 가격경쟁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균형가격에서 일정비율(3%p)은 만점을, 그 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기본점수 부여
- 「**균형가격 ~ [균형가격 × 97%]**」를 만점구간으로 설정



- 균형가격 대비 **-3%미만 금액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기본점수(80점) 부여**

2. 입찰가격

1

가격점수 산정 방법

○ 균형가격 산출

- 입찰가 상위 40%, 하위 20%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
- 담합으로 인한 균형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여자 수에 따라 균형가격 설정기준 조정
 - 10개 미만 업체 : 상위 50%, 하위 10% 제외
 - 10개 ~ 20개 업체 : 상위 40%, 하위 10% 제외
- * **균형가격 산정시 제외** : 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이윤 또는 공종에 (-)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한 금액 또는 법정경비가 3/1,000 낮은 경우, 실적공사비 공종이 3/1,000 낮은 경우, 발주기관 작성 직접노무비보다 20/100 낮은 경우

2. 입찰가격

참고1 균형가격별 가격점수 (투찰률기준)

		투찰률																		
		88%	87%	86%	85%	84%	83%	82%	81%	80%	79%	78%	77%	76%	75%	74%	73%	72%	71%	70%
균형 가격 (예가 대비)	72%	82.1	84.4	86.6	88.6	90.4	92	93.4	94.7	95.8	96.8	97.7	98.4	99	99.4	99.7	99.9	100	100	100
	74%	84.3	86.6	88.7	90.6	92.3	93.8	95.1	96.3	97.3	98.1	98.8	99.3	99.7	99.9	100	100	100		
	76%	86.6	88.9	90.9	92.7	94.3	95.7	96.8	97.8	98.6	99.2	99.7	99.9	100	100	100				
	78%	89.1	91.2	93.2	94.8	96.2	97.4	98.3	99.1	99.6	99.9	100	100	100						
	80%	91.7	93.7	95.4	96.8	98	98.9	99.5	99.9	100	100	100								
	82%	94.3	96.1	97.5	98.6	99.4	99.8	100	100	100										

※  은 기본점수인 80점

2. 입찰가격

참고2 균형가격별 가격점수 (입찰금액 기준)

예시1) 예정가격 500억원, 균형가격 375억원(75%)인 경우 가격점수

입찰금액(억원)	364미만	370	375	390	405	420	435	450
가격점수(점)	80	100	100	99.28	97.08	93.30	87.73	80.00

예시2) 예정가격 500억원, 균형가격 400억원(80%)인 경우 가격점수

입찰금액(억원)	388미만	390	400	405	420	435	450	465
가격점수(점)	80	100	100	99.87	97.98	93.97	86.60	75.99

2. 입찰가격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평가

○ 적정한 공사비 산정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평가

① **단가 심사(감점)** = [-]입찰금액배점 20% × $(1 - \frac{1}{100} \text{ [단가점수]})$

- 세부 공종별로 기준 단가의 ±20%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

※ **기준단가** = $1/2 \times \text{[기초금액 단가 + 입찰자 평균단가]}$

②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 [-]입찰금액배점 20% × $(1 - \frac{1}{100} \text{ [하도급점수]})$

- 세부 공종의 하도급할 단가가 예정가격의 60% 이상이고, 입찰단가의 82% 이상인 경우 100점, 그 외는 0점
- 하도급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불이행시 해당 발주기관 입찰에서 2년간 감점(불이행 한 건당 하도급 점수의 10%)

2. 입찰가격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평가

③ **물량 심사(감점)** = [-]입찰금액배점 20% × $(1 - \frac{1}{100})$ [물량점수]

-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하여 적용
- 세부 공종별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

④ **시공계획 심사(감점)** = [-]입찰금액배점 20% × $(1 - \frac{1}{100})$ [시공계획점수]

-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하여 적용
- 시공계획, 공사기간, 안정성 확보, 환경 오염 방지, 품질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평가 (적정 100%, 부적정 0% 등)

2. 입찰가격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평가

[단가 심사 예시 : 가격 배점 50점]

- 기준단가 대비 $\pm 20\%$ 범위 내이면 적합

세부공종	금액 비중(%) (a)	기준단가 (b)	입찰단가 (c)	비율 (c/b)	판정 점수 (d)	단가 점수 (a×d)
1 세부공종	20	15,000	10,000	67%	0	0
2 세부공종	10	9,000	9,000	100%	1	10
...
2,000 세부공종	5	45,000	40,000	89%	1	5
합계	100					80

- 단가 심사(감점) = (-) 50점 × 20% × {1 - (1/100 × 80점)} = (-) 2.0점

2. 입찰가격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평가

[물량 심사 예시 : 가격 배점 50점]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최종 물량의 $\pm 2\%$ 이내인 경우 적합

세부공종	금액 비중 (a)	추정 물량	입찰 물량	최종 물량	판정 점수 (b)	물량 점수 (c=a×b)
1 세부공종	20	90	90	90	1	2
2 세부공종	10	200	180	180	1	1
...
30 세부공종	5	6	4	5	0	0
합계	100					95

$$\text{-물량 심사(감점)} = (-) 50\text{점} \times 20\% \times \{1 - (1/100 \times 95\text{점})\} = (-) 0.5\text{점}$$

3. 사회적 책임

1 건설인력 고용

○ 입찰참가 건설업체의 고용창출 기여도 및 고용환경 개선 정도를 평가

* 과거 동일 사업장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 근로자까지 포함

평가 항목	평가 산식
고용탄력성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최근 3년) - 기성총액 증감률(최근 3년) * 각각의 증감률은 전체 건설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화{(변수값-평균)/표준편차} 후 적용 - 0.4 이상 : 100점 0.3 이상 : 80점 - 0.25 이상 : 60점 0.15 이상 : 40점 - 0.10 이상 : 20점 0.10 이하 : 0점 ※ 최근 3개년 자료('14년 발주공사는 '10~'12년 자료)를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탄력성 점수산정 후 발주기관에 통보
근로기준법 준수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횟수에 따라 차등 점수 - 0건 : 100점, 1~2건 : 80점, 3~4건 : 60점, 5~6건 : 40점, 7~8건 : 20점, 9건이상 : 0점 ※ 가장 최근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활용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점수산정후 발주기관에 통보

※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044-202-7215)

3. 사회적 책임

2 공정 거래

○ 입찰참가 건설업체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준수 정도**를 평가

평가지표	배점		세부 점수
	가중치	점수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	5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감점 < 예시 : 입찰담합 등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25점 감점, 과징금 : 30점~40점 감점 - 법인고발 : 45점, 법인 및 개인고발 : 50점 감점 *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예시 : '14.8 입찰공고시 '12.8~'14.8) 평가, 입찰자가 공정위로부터 위반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상호협력 평가 점수	5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가 매년(5.31) 공표하는 상호협력평가점수* 적용 *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불법 하도급행위, 신인도 등 종합평가 ** 매년 5.31에 공표되는 최신 상호협력평가점수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발주기관이 적용
합 계	100		

※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6)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08)

3. 사회적 책임

3 건설 안전

○ 건설업체의 건설 안전 제고노력 정도를 평가

<p>조정률</p>	<p>○ [최근년도 사망만인율(재해율)×0.5+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0.3+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0.2]</p>
<p>사망만인율 평가 (50%)</p>	<p>○ 사망만인율* = $\frac{\text{사망자수}}{\text{상시근로자수}} \times 10,000$</p> <p>*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 상시근로자수 = $\frac{\text{연간국내공사실적액} \times \text{노무비율}}{\text{건설업 월평균임금} \times 12}$</p> <p>※ '14년 발주공사는 '10~'12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점수산정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발주기관에 통보</p>
<p>재해율 평가 (50%) ('15년 시범발주부터 적용)</p>	<p>○ 재해율 = $\frac{\text{재해자수}}{\text{상시근로자수}} \times 100$</p> <p>※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시, 위반 건수에 따라 재해율 점수 감점 [1건 20점, 2건 40점, 3건 60점, 4건 80점, 5건이상 100점 감점]</p>

※ 문의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044-202-7727)

4. 기 타

1

계약 신뢰도

- 당해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 또는 입찰한 공사에서 **계약 신뢰를 위반한 경우 일부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 1건 위반시 2년간(입찰일 기준) 해당 발주기관 입찰에서 하도급점수의 10% 감점 (최대 감점폭 : 가격점수의 20%)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 1건 위반시 2년간(입찰일 기준) 해당 발주기관 입찰에서 배치기술자 심사점수의 10% 감점 (최대 감점폭 : 배치기술자 배점)

* 감점 기간 산정 기준일 : 해당 업체 서면 통보일(공문 발송일)

5. 평가절차

1

300억원 ~ 1,000억원 미만 공사

① 종합평점(1차)

- 공사수행능력
- 사회적책임
- 가격평가

② 단가, 하도급계획 심사(2차)

- 세부공종별 단가 및 하도급관리계획 심사
⇒ 감점 산정

③ 낙찰자 결정

- 종합평점 - 단가 및 하도급계획 심사 감점 = 최종 종합평점
- 평점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5. 평가절차

2

1,000억원 이상 공사

① 종합평점(1,2차)

- 종합평점 - 단가 및 하도급 계획 심사 감점

② 심사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 점수 (1,2차) 순위에 따라 심사대상자 선정

③ 물량, 시공계획 심사

- 심사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 심사대상자(적격자)에 물량산출 근거 제출 및 설명 요청
- 시공계획 및 물량 적정성 심사
⇒ 감점 산정

④ 낙찰자 결정

- 심사대상자(적격자)의 최종 종합평점* 산정
* 종합평점(1,2차) - 물량 및 시공계획 점수
- 동 평점이 차순위자 보다 높을 경우 낙찰자로 선정,
차순위자 보다 낮을 경우 차순위자를 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물량, 시공계획 심사

» V 시범사업 및 추진 일정



1. 시범사업

□ 시범사업 기관 및 기간

- 내, 철도공, 수공, 도공, 한수원, 농어촌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 시범사업 기간(2년) : '14년 ~ '15년

□ 대상사업

- 공공기관의 300억원 이상 발주공사의 일부
- '14년도 발주사업 중 22건(첨부 참조) 추진 예정
 - 내(11건), 철도공(4건), 수공(3건), 도공(1건), 한수원(1건), 농어촌공사(1건), 부산항만공사(1건)
- '15년도 시범사업은 '14년 말에 발굴 · 공개 예정

첨부

'14년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대상 (잠정)

연번	발주기관	시범사업명	공사규모 (억원)	공사 유형	예상 발주시기
1	LH	담양 백동2지구	300	건축	'14.5월
2	LH	남양주 별내지구	500	건축	'14.6월
3	LH	시흥 목감지구	700	건축	'14.7월
4	LH	춘천 우두지구	300	건축	'14.7월
5	LH	대구 금호지구	800	건축	'14.8월
6	LH	남양주 별내지구	600	건축	'14.8월
7	LH	화성 봉담2(A4블록)	600	건축	'14.9월
8	LH	서울 하계지구	300	건축	'14.9월
9	LH	화성 봉담2(A3블록)	900	건축	'14.9월
10	LH	당진대덕 수청지구	300	건축	'14.10월
11	LH	제천 강저지구	800	건축	'14.10월

연번	발주기관	시범사업명	공사규모 [억원]	공사 유형	예상 발주시기
12	철도시설공단	포항 ~ 삼척 3공구	1,000이상	교통	'14.7월
13	철도시설공단	포항 ~ 삼척 6공구	1,000이상	교통	'14.7월
14	철도시설공단	포항 ~ 삼척 8공구	1,000이상	교통	'14.7월
15	철도시설공단	포항 ~ 삼척 10공구	1,000이상	교통	'14.7월
16	수자원공사	송산그린시티	600	토목	'14.3월
17	수자원공사	취정수시설 이원화	403	토목	'14.4월
18	수자원공사	공업용수도 복선화	452	토목	'14.7월
19	도로공사	대구순환고속도로 2공구	2,300	교통	'14.7월
20	한수원	본사사택 신축공사	300	건축	'14.10월
21	농어촌공사	대단위 농업개발(화옹)	826	농업토목	'14.7월
22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감천항 확장공사	652	항만건설	'14.4월

2. 추진일정

□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최저가낙찰제 확대(300→100억원) 유예(’14→’16년)

※ 국가계약법 시행령 기 개정 (’13.12.30)

□ 시범사업 및 입찰 일정 확정(’14.2월)

- 기관별 시범사업 대상 및 입찰 일정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
- 시범사업의 종류·규모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대상사업 선정

□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 마련(’14.2~3월)

- 시범사업 기관에 공통 가이드라인 제시(기재부)
 - 이를 토대로 각 시범사업 기관에서 세부 심사기준 마련

□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14년 ~ ’15년)

- 정부, 공공기관, 건설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범사업 평가 TF 운영
 - ※ 시범사업 과정에서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추가 개선·시범적용
- 성과평가를 토대로 추가 시범사업 여부 또는 확대적용 검토
 - 사회적 책임 배점 방법, 법제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추가검토

감사합니다

